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485-08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 Ⅱ

ISSN 1975-3438

디 자 인 판 례

(통권 제19호)

2009. 6.



특허심판원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일 러 두 기

1. 이 책자는 심판관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금속,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2. 이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09. 01~2009. 03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 하였습니다.
3.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판례번호 중 “후” 자는 상고사건을, “허” 자는 특허법원사건을, “당” 자는 특허심판원사건 중 당사자 사건을, “원” 자는 특허심판원사건 중 거절결정불복사건을 표시한 것입니다.
4. 그 밖에 심판장·심판관 등이 매월 중요 판례, 판례 동향 등을 연구 보고한 판례조사연구보고서를 수록하여 심사·심판 업무 수행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5. 판례조사연구보고서에 기재된 작성자의 의견은 특허심판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목 차

[등록무효심판]

1. 2008후5090(유에스비 드라이브, 파기환송)-2008허7331(심결취소)	3
2. 2007후4830(건물 차양막 받침구, 파기환송)-2007허4861(심결취소)	7
3. 2008허11699(속옷용 옷걸이, 심결취소)-상고(2009후900)	12
4. 2008허12517(의자용 좌판, 기각)-심결확정	20

[권리범위]

1. 2007후4847(건물차양막 받침구, 파기환송)-2007허4878(심결취소)	31
2. 2008허12043(헤드폰, 심결취소)-심결확정	39
3. 2008허11392(샌드위치 판넬, 기각)-심결확정	61
4. 2008허9252(우편함 도어, 기각)- 상고기각(심리불속행)	73

등 록 무 효 심 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후5090 등록무효(디)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오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 알앤디비센터 509호
대표이사 강병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엑센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8-23 엑센빌딩
대표이사 박수성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광술, 김원식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08. 11. 5. 선고 2008허7331 판결
판 결 선 고 2009.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7. 8. 17. 주식회사 아이오셀(등록번호 :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유에스비 드라이브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 제457470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자, 소외 회사는 심판

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하여 다투다가 위 등록무효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8. 4. 23. 원고 회사(원래 그 상호가 ‘주식회사 미광콘택트렌즈’이었다가 2008. 6.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 흡수합병되었는데, 특허심판원은 그대로 심판절차를 진행하여 2008. 5. 9.자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면서 그 심결문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소외 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표시한 점, 원고 회사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2008. 6. 11.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심판절차 중에 소멸된 소외 회사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 회사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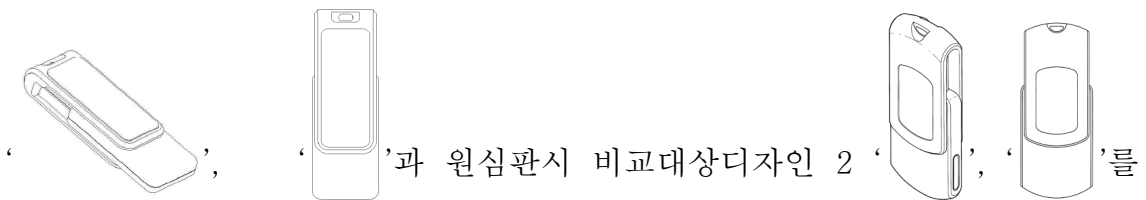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2008. 7. 2.자, 2008. 9. 3.자 및 2008. 10. 8.자 각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흡수합병 및 원고 회사의 상호변경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갑 제2호증의 1, 2(각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심리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

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난 사시도,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세로로 긴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상인 점, 평상시에는 보호용 덮개가 메모리칩 단자부가 돌출되어 있는 몸체를 ‘ㄷ’자 형태로 감싸고 있다가 사용시에는 몸체가 회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점, 보호용 덮개의 상단에 스트랩 걸이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전체 형상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 몸체 하단과 보호용 덮개 상단의 라운딩 처리 정도, 보호용 덮개 정면의 덧붙임판 및 스트랩 걸이홈의 형상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 판단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지된 형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

주 심 대법관 전수안 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후4830 등록무효(디)
원고, 피상고인 서선철 (*****-*****)
서울 광진구 군자동 91-13 두현빌딩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고, 상고인 1. 문구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816 *****
2. 주식회사 지에스월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동 277-17 아카데미타워 1807호
대표이사 손연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61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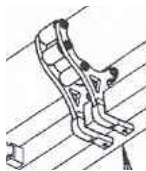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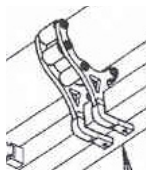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45777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건물 차양막 받침구”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당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심 판시와 같은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당해 물품을 대하는 일반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4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면서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에서 본 사시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비교대상디자인 4 ‘’를 대비하여 보면, 상부가 오목한 반원 형상을 이루는 2개의 프레임 사이에 소정 간격을 두고 원통형 롤러를 설치하여 롤러부를 구성한 점, 사각바로 된 지지대에만 끼울 수 있도록 각이 진 장착부를 형성한 점, 장착부가 롤러부에 연결되는 위치가 3번째 롤러와 4번째 롤러 사이의 프레임인 점이 공통되고, 롤러부가 롤러튜브를 받치기 위하여 굽는 각도 또한 거의 비슷하므로, 양 디

자인은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 다만 양 디자인은 프레임과 장착부를 연결하는 부위에서의 형상 및 삼각형 구멍의 유무, 장착부가 통철판 구조로 형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당해 물품에 근접하여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 판단하면서, 롤러부와 장착부의 형상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고 공지된 형상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양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4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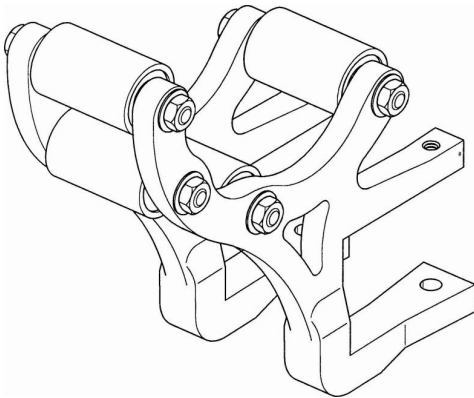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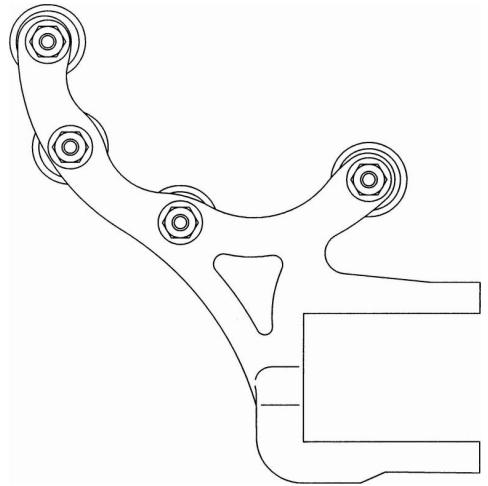
별 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갑 제2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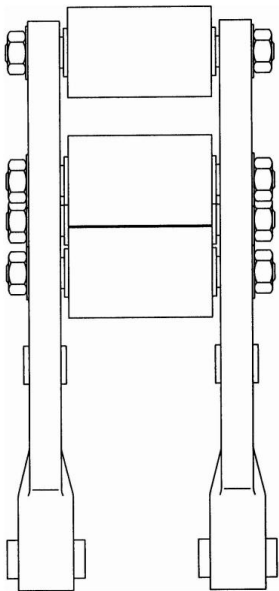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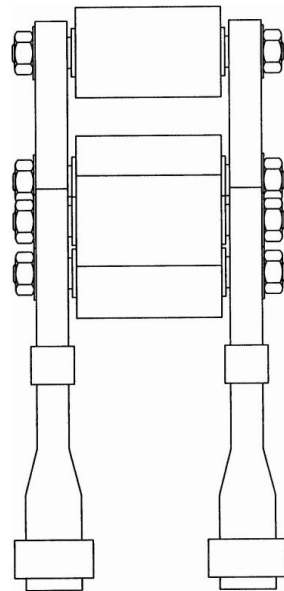
정면도(배면도는 정면도와 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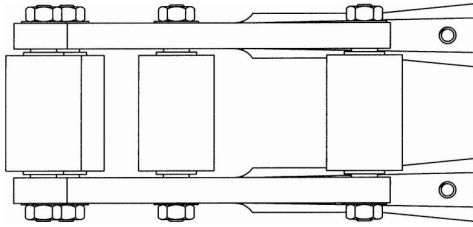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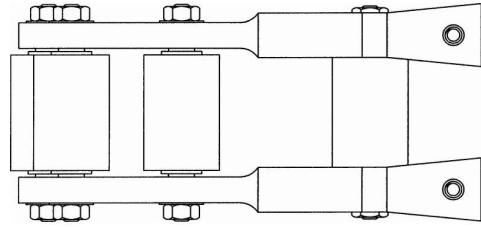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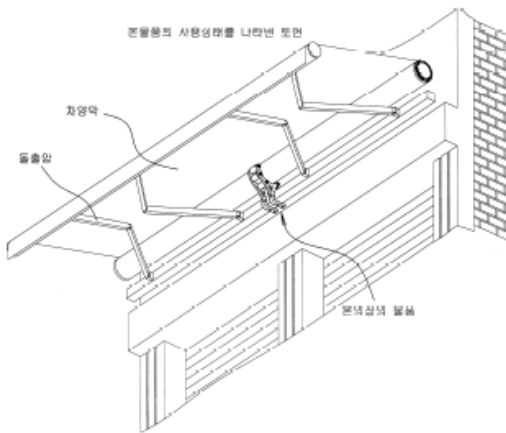
평면도



저면도



사용상태도



2. 비교대상디자인의 사진영상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8허11699 등록무효(디)
원 고 오창춘
광주시 도척면 *****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
피 고 주식회사 대승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261-1
대표이사 이광배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훈빈
변 론 종 결 2009. 1. 7.
판 결 선 고 2009. 2. 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8. 9. 1. 2008당9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08. 1. 1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①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제470119호/2007. 2. 16./2007. 11. 15., ② 물품의 명칭 : 속옷용 옷걸이, ③ 디자인권자 : 원고, ④ 디자인의 설명, 창작의 요점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8당95호로 심리한 다음, 2008. 9.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별지 2 기재의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무료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때 디자인의 요부는 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주요 도면, 물품의 사용상태와 용도,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형과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디자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디자인이 단순한 형태로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의 디자인이 많이 고안되어 왔으며 구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경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성 부분이 있어서 심미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등에는 디자인의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종래의 디자인에 비하여 물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변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체적인 심미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이나 모양을 요부에 포함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나. 유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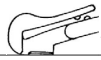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속옷용 옷걸이는 보통 정면을 향하여 보게 되고 둥근 형상의 걸고리부는 흔히 사용되어 왔으며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사람의 주

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 즉 요부는 정면도인 에 도식된 것 중 ① 곡선형의 어깨걸이 활대 , ② 그 하단에 형성된 반타원형의 라벨부착부 , ③ 양단에 형성된 속옷고정편  및 그 아래의 집게부 , 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대비되

는 비교대상디자인은 와 같다.

살피건대, 속옷용 옷걸이는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고안되어 왔으며 그 기본적인 형태 즉 걸고리부를 중심으로 한 어깨걸이 활대 및 그 양단의 집게부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성부분인 점, 비교대상디자인에서 곡선형의 어깨걸이 활대, 그 하단의 라벨부착부 및 양단의 속옷고정편 및 집게부의 형상과 모양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6호증에 기재된 디자인(NO. 517, 이하 선행디자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미 공지된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속옷고정편은 활대에 연장되는 부분의 양 측단부를 넓게 형성하고 가로로 긴 구멍을 형성함으로써 브래지어 등을 전시할 때 끈의 길이를 쉽게 조절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다가 그와 같은 변형이 디자인 전체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속옷고정편의 형상과 모양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감안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의한 심미감의 차이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면, 양 디자인의 활대 부분과 라벨부착부는 동일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속옷고정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와 같이 어깨걸이 활대와 연결되는 부분이 활대보다 넓게 형성되어 있고 아래로 단차를 이루고 있으며 가로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와 어깨걸이 활대와 연결되는 부분의 폭이 활대와 같고 단차나 가로구멍이 없는 점, 집계부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와 같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와 같이 역삼각형에 가까운바, 동일한 부분으로 인한 심미감의 유사성보다 다른 부분으로 인한 심미감의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인정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_____

 판사 오충진 _____

 판사 곽민섭 _____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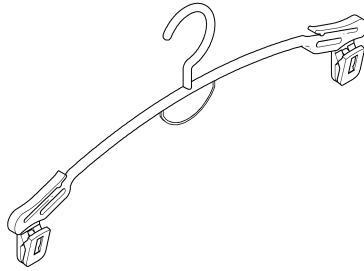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참고도 1 및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레이저 및 팬티를 걸어두며 사용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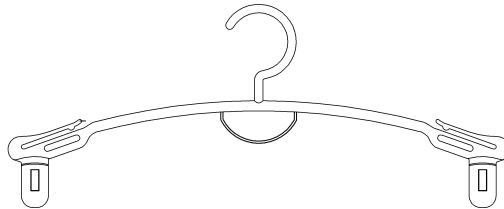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속옷용 옷걸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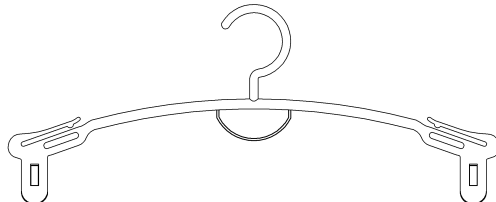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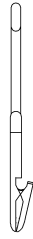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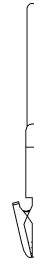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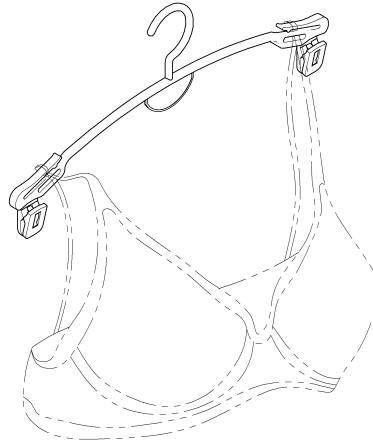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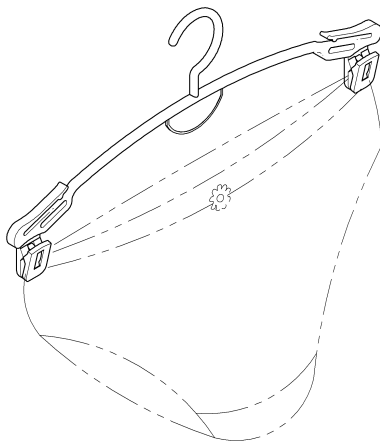
[저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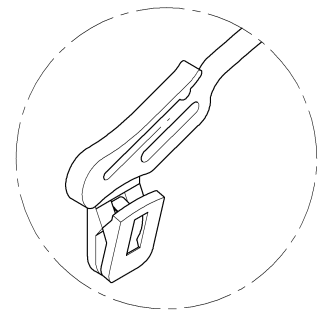
[참고도 1]



[참고도 2]



[참고도 3]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235922호/1998. 6. 18./1999. 1.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옷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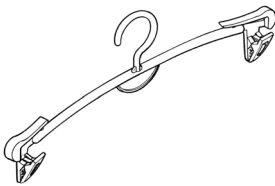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참고도 1 및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레이저 및 팬티를 걸어두며 사용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속옷용 옷걸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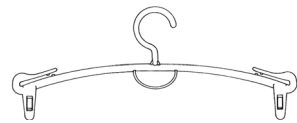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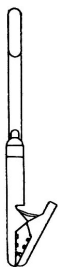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끝 -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 사 건 2008허12517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진성기업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 309 농공단지
대표이사 윤대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만호
- 피 고 1. 박종익 (*****-*****)
대구 북구 침산동 105-5 *****
2. 김형태 (*****-*****)
울산 울주군 웅촌면 *****
3. 송옥용 (*****-*****)
하남시 하산곡동 *****
4. 한유씨시스템 주식회사
화성시 기안동 245-7
대표이사 한영일
5. 주식회사 제일에스에프
경남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443
대표이사 김태훈
6. 주식회사 금강교구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467-2
대표자 이사 신상구
7. 주식회사 이오스코리아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500-16

대표이사 이재환

8. 주식회사 성림교구

서울 종로구 봉익동 159-3

대표자 이사 류성훈

9. 선진공업 주식회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91-3

대표이사 김상용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방상호

변 론 종 결 2009. 1. 21.

판 결 선 고 2009. 2.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08. 10. 1. 2007당31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피고들은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원고는 별지 1항 기재와 같이 “의자용 좌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88906호, 2003. 7. 25. 출원, 2005. 8. 2. 등록)의 디자인권자이다.

다.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의자용 좌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321344호, 2001. 12. 20. 출원, 2003. 3. 24. 등록)에 게재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항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는 소외 선진기업 주식회사(경기도 평택시 지체동 67)가 2000. 3. 10.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송우리 537-1에 있는 동남고등학교에 납품한 ‘의자 등받이’로서, 그 도면은 별지 3항과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유사 여부

가.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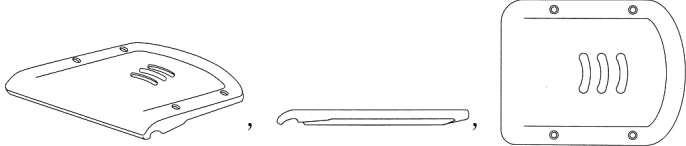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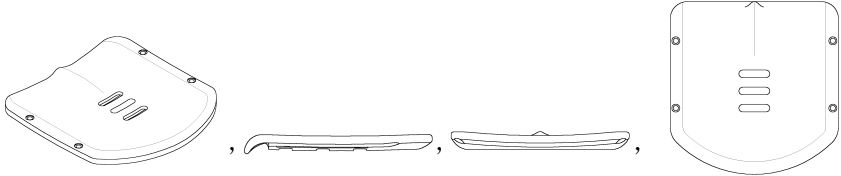
나. 양 디자인의 대비

(1) 양 디자인의 물품들은 모두 ‘의자용 좌판’으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유사한 물품이다.

(2) 양 디자인 물품은 실제 거래시 또는 사용시 정면 및 평면의 형상과 모양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주된 요부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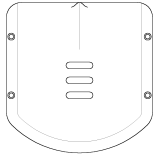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주된 요부인 정면 및 평면의 형상과 모양이 가장 잘 드러난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를 중심으로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고, 비교

대상디자인 1은 와

같으며, 비교대상디자인 2는 와 같다.

(3) 대비의 편의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평면도를 우측으로 90도 회전

시키면 와 같고, 비교대상디자인들의 평면도는 

와 같다.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좌판의 뒷부분(등받이쪽)이 라운딩 처리되어 있는 점, ② 중앙부에 3개의 관통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좌판의 앞부분(무릎쪽)이 아래쪽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경사진 점, ④ 좌판의 좌우 가장자리에 홈이 2개씩 형성된 점 등과 같이 ‘의자용 좌판’의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판의 윗면이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음에 비해,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좌판의 중앙부분이 돌출(양쪽 허벅지의 구분선과 같은 기능)되어 있는 점에서 상이하고, 관통홈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호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그러나 관통홈의 형상의 변경은 별다른 심미감의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또한 좌판의 상면을 평평한 형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디자인에 불과한 이상, 비교대상디자인들처럼 좌판의 중앙부분이 돌출되도록 독특하게 디자인된 것으로부터 좌판이 평평한 일반적인 형상으로 변형한 것에 어떠한 새로운 심미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차이점은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양 디자인은 일반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정면 및 평면의 형상과 모양에서의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유사한 디자인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한바, 그 취소를 구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_____

 판사 오충진 _____

 판사 심준보 _____

별 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가.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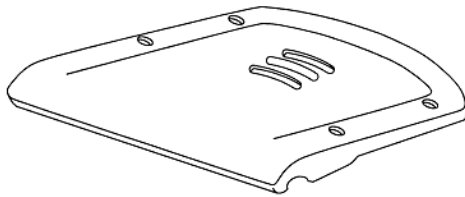
(1) 재질은 플라스틱임

(2) 의자의 좌판으로 사용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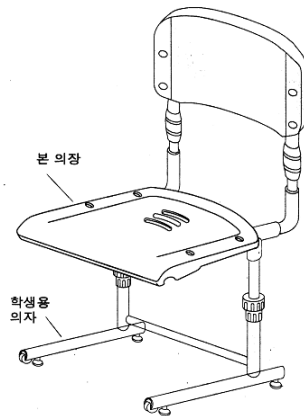
나.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의자용 좌판의 전면을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처리하고, 중앙부에 호형태의 홈을 3줄로 형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미와 유연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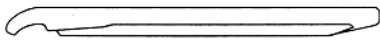
다.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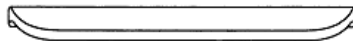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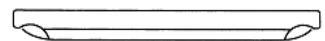
사용상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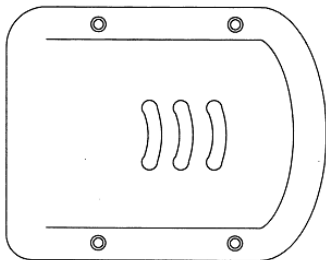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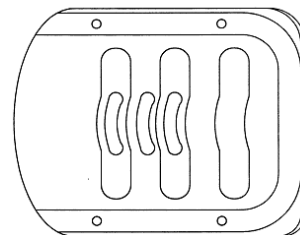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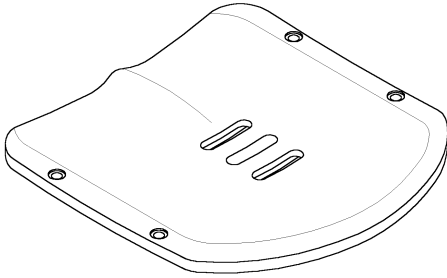


저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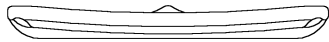
2. 비교대상디자인 1

가.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재 임.

나. 도면



사시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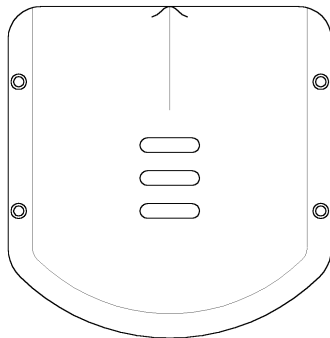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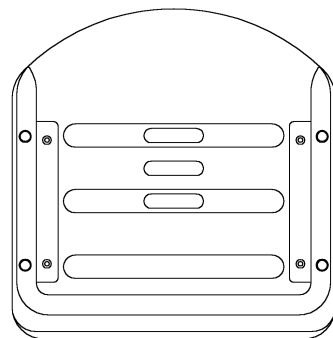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3. 비교대상디자인 2



끝.

권리범위확인심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후4847 권리범위확인(디)
원고, 피상고인 서선철 (*****-*****)
서울 광진구 군자동 91-13 두현빌딩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고, 상고인 1. 문구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816 *****
2. 주식회사 지에스월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동 277-17 아카데미타워 1807호
대표이사 손연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 30.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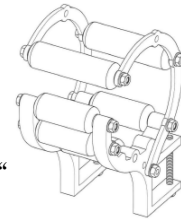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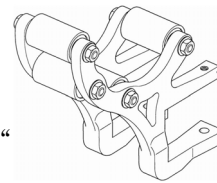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 “



이 ‘건물 차양막 받침구’인 이 사건 기본디자인 “(등록번호 제345777호)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인 상부 롤러부의 유무에 따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1호디자인과 유사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유사1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1호디자인은 물론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 이 사건 유사1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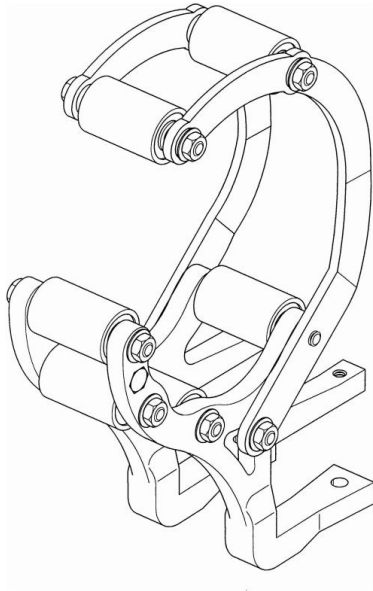
주심 대법관 박시환 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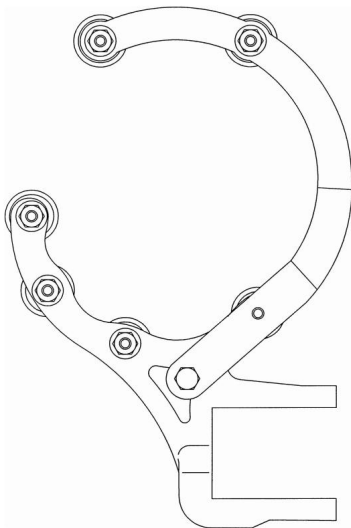
별 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유사1호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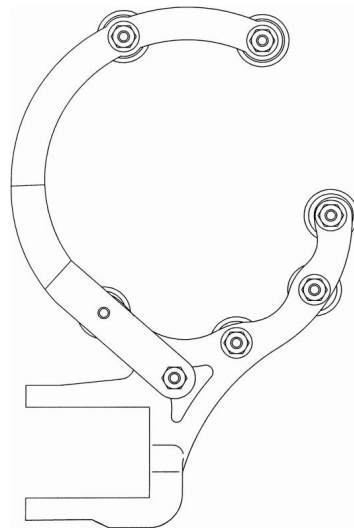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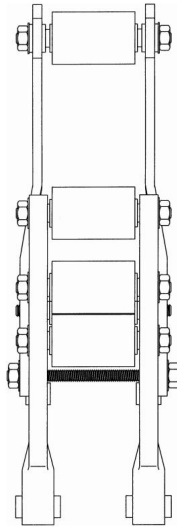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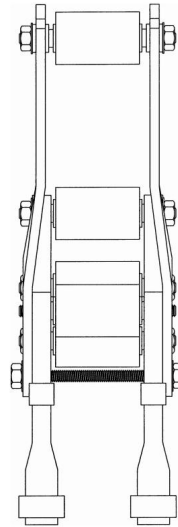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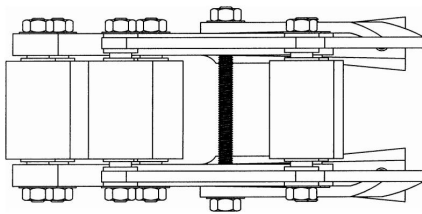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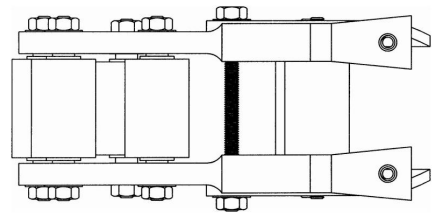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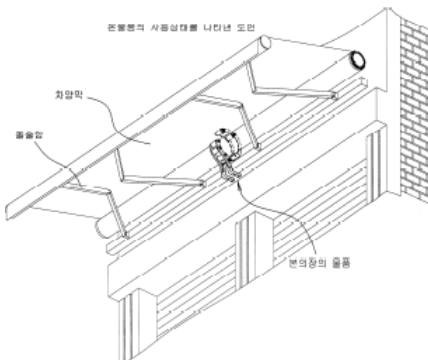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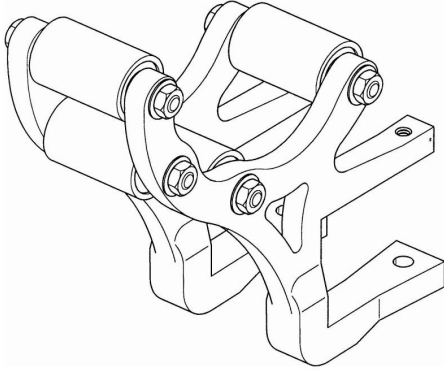
저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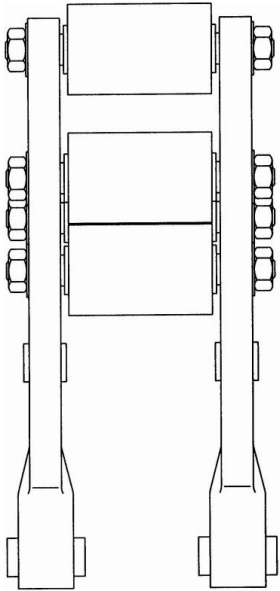
사용상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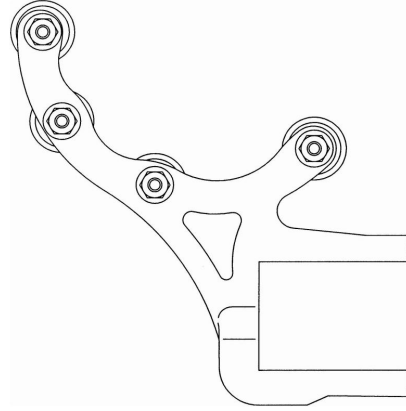
2.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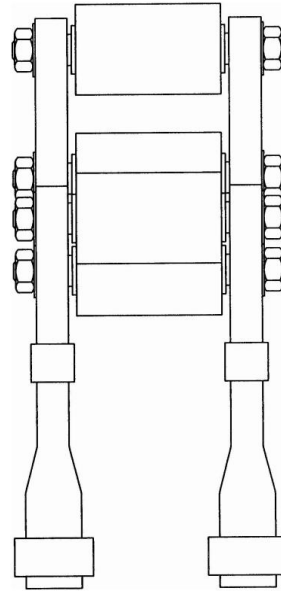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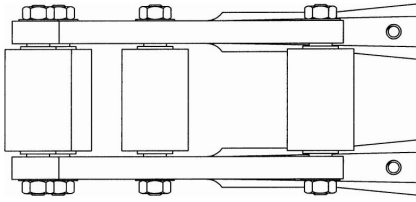
정면도(배면도는 정면도와 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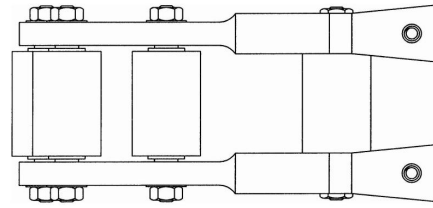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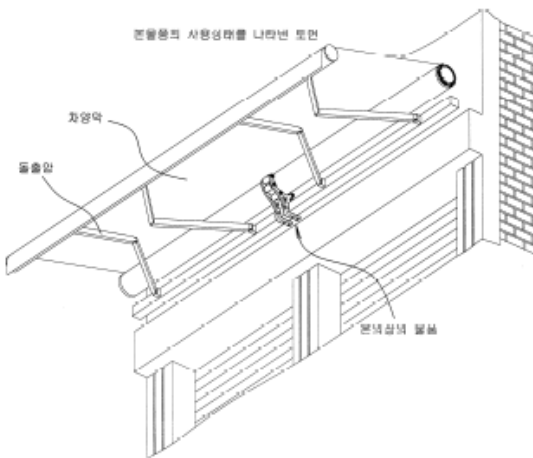
평면도



저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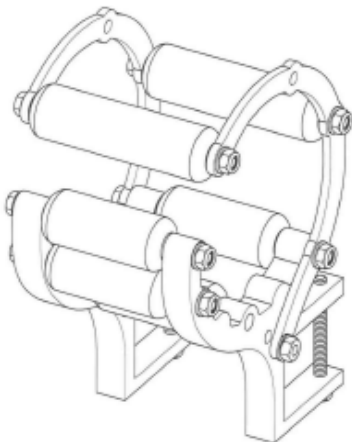


사용상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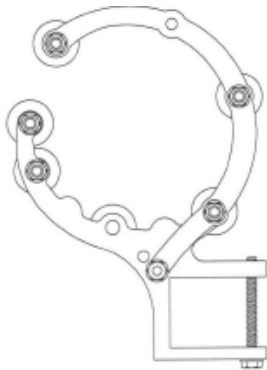


3.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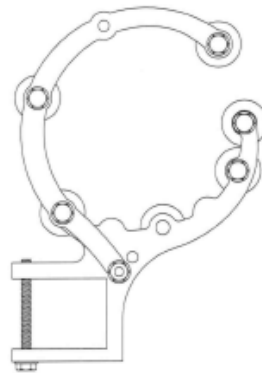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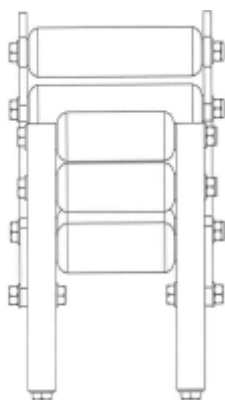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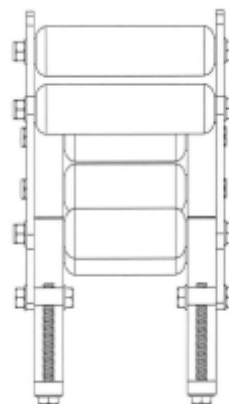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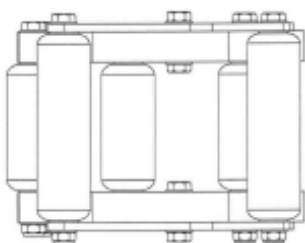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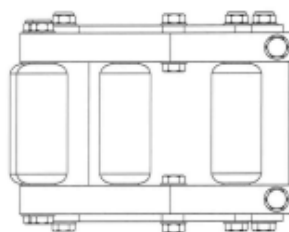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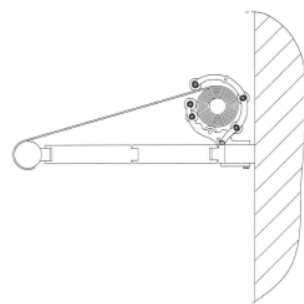
평면도



저면도



사용상태도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8허12043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박의봉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7 *****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 고 김성호 (*****-*****)
인천 남동구 만수동 13 *****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용환
변 론 중 결 2009. 2. 26.
판 결 선 고 2009. 3. 1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8. 9. 24. 2008당7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① 대상물품 : 헤드폰

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5. 11. 17./2006. 7. 5./제419468호

③ 디자인권자 : 원고

④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별지 1.과 같은 헤드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⑤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이고, 음향기기로부터 출력되는 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헤드폰으로 사용하는 것임

나.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헤드폰으로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에 표현된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775호로 심리한 후 2008. 9. 2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구성은 유사하나 그러한 구성은 헤드폰의 일반적인 형태이거나 공지된 요소에 불과하고, 양 디자인은 세부적인 차이가 커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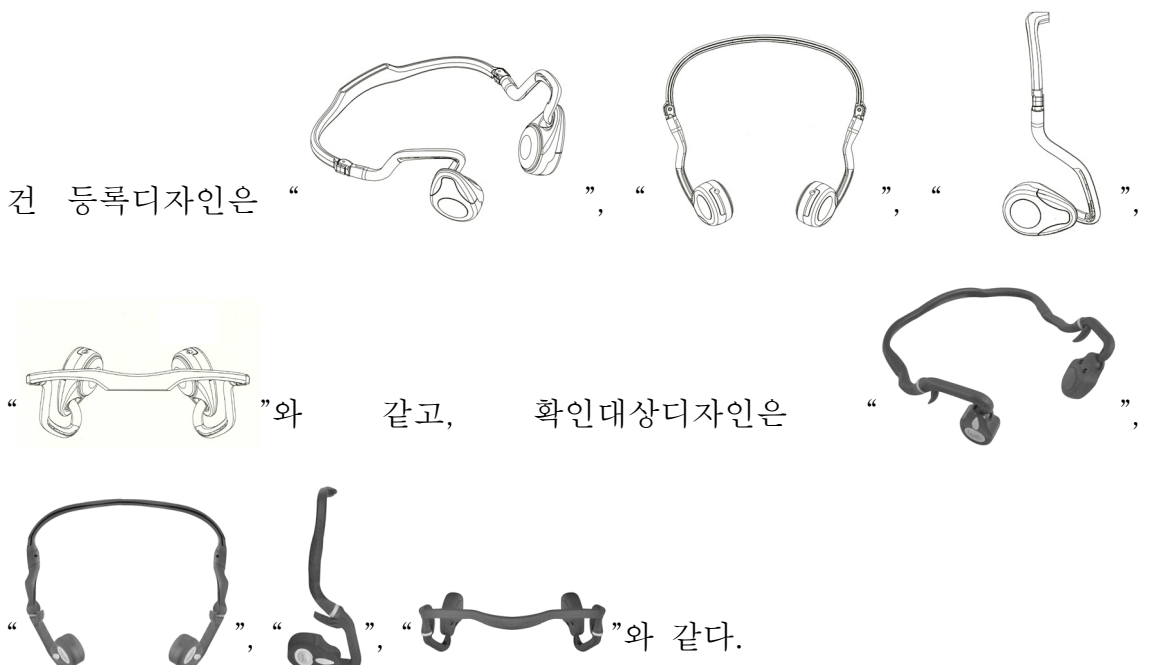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근본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

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 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 291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 29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헤드폰으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시도, 배면도, 좌측면도 및 평면도를 차례로 보면, 이 사



위 도면들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U’자 형상의 메인프레임과 좌우의 서브프레임이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
 고, 서브프레임 끝에는 이어폰이 결합되어 있으며, 연결된 각 부분의 비례가
 비슷한 점, ② 좌우의 서브프레임은 귀에 걸 수 있도록 ‘ㄷ’자 형상을 이루는
 3단 절곡부로 되어 있는 점, ③ 이어폰은 서브프레임에 접한 부분은 타원형
 에 가까운 반면 반대쪽 부분은 원에 가까운 형상으로 되어 있어 대체로 “



”과 같은 형상이고, 이어폰 바깥면의 원형 부분에 거의 차게 원이 그
 려져 있는 점, ④ ‘U’자 형상의 메인프레임의 중간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하
 여 폭이 약간 더 넓고 굴곡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전체적인 형상과 모
 양이 유사하다.

반면에, 양 디자인은 ㉠ 메인프레임과 서브프레임을 연결하는 커넥터
 의 형상과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와 같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에는 “”와 같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매끈한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점, ㉡ 이어폰의 형상과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과 같아 테두리 선의 흐름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그 바깥면의
 타원형 쪽 부분에 표현된 모양도 다른 점, ㉢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좌우의 서

브프레임의 절곡부 안쪽에 “”와 같이 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절곡부에는 그러한 돌기가 없는 점, 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U자 형상의 메인프레임의 중간 부분의 테두리가 한 쪽은 곡선, 다른 한 쪽은 직선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양쪽 모두 곡선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양 디자인을 근접하여 볼 때 비로소 주의를 끄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줄 정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헤드폰의 일반적인 형태이거나 공지된 구성요소에 불과하여 확인대상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형상의 중요도를 세부적인 차이점들에 비해 낮게 평가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관찰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9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9(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등록공고되었고, 그 각 형상과 모양은 별지 3. 내지 11.에 표현된 바와 같다)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헤드폰에 있어서 ‘U’자 형상의 메인프레임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헤드폰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메인프레임과 좌우의 서브프레임이 커넥터 등으로 연결되고 서브프레임 끝에는 이어폰이 결합되어 있는 구성이 비교대상디자인 3, 7 내지 9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어폰에 연결되는 프레임이 귀에 걸 수 있도록 절곡부나 굴곡을 형성하는 구성이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9에 개시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은 헤드폰의 일반적인 형태로 공지된 형상이라 하더라도 헤드폰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구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메인프레임, 서브프레임, 이어폰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들과는 차이가 나고(특히, 서브프레임의 절곡부 및 이어폰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은 비교대상디자인들에 나타난 그것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각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비교대상디자인들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U’자 형상의 메인프레임, 귀에 걸리도록 되어 있는 절곡부의 서브프레임과 커넥터, 그리고 이어폰으로 형성되는 구성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반대의 전제에 섰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유석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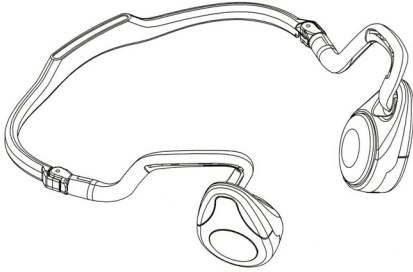
 판사 성창익 _____

 판사 곽민섭 _____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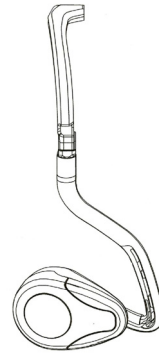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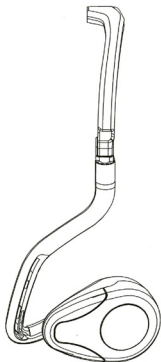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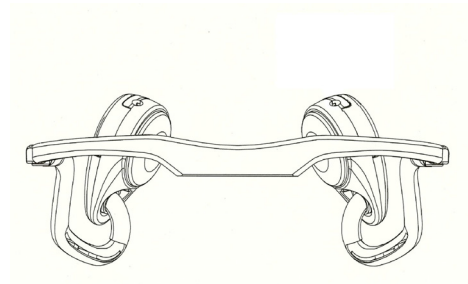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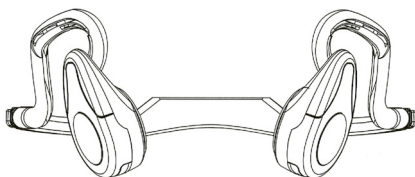
[우측면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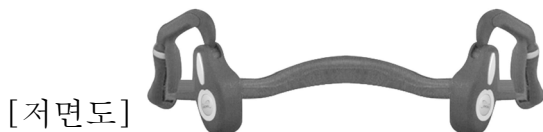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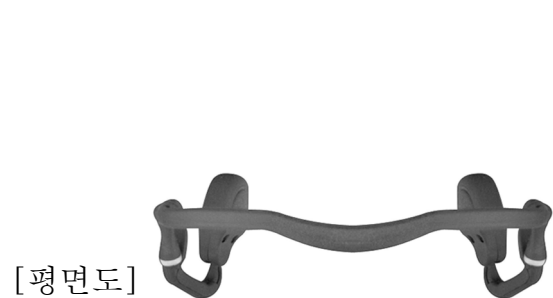
[저면도]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메인프레임의 양단부에 3단으로 굴곡된 커넥터를 결합시키고, 절곡부의 끝에 이어폰을 결합시킨 것이며, 커넥터 절곡부에 날개를 형성한 것.



(별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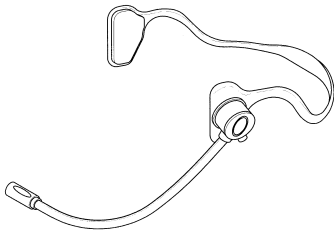
비교대상디자인 1 (을 제1호증의 1)

[디자인등록번호] 제37985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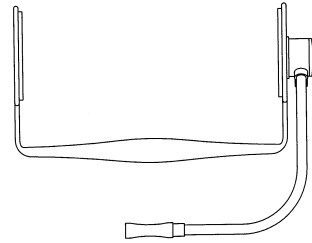
[등록공고일자] 2005. 4. 2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산소발생기용 헤드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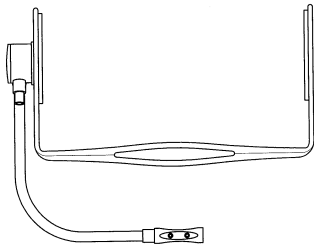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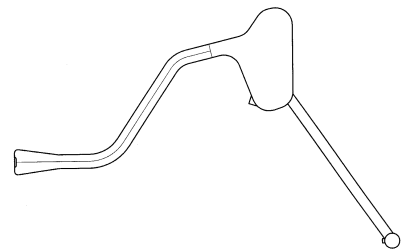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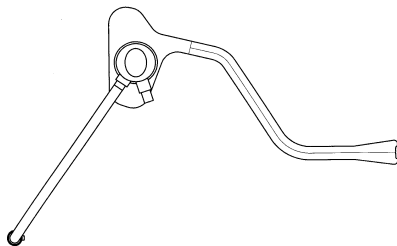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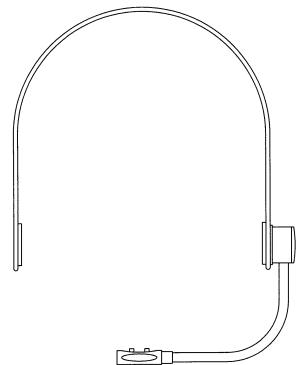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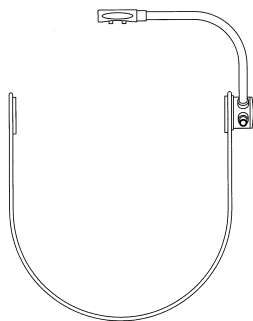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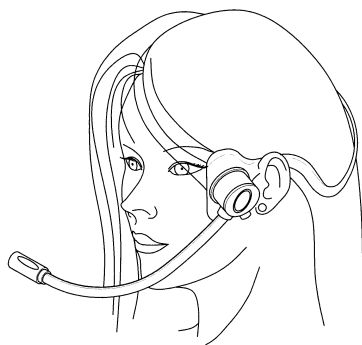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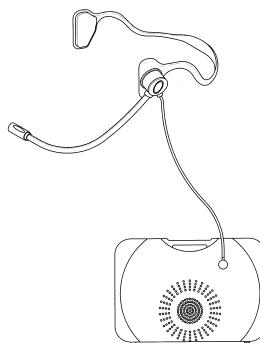
[저면도]



[참고도]



[참고도]



(별지 4)

비교대상디자인 2 (을 제1호증의 2)

[디자인등록번호] 제319813호

[등록공고일자] 2003. 3. 1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전화기용 헤드셋

도면대용 사시사진



[사시도]

도면대용 정면사진



[정면도]

도면대용 배면사진



[배면도]

도면대용 좌측면사진



[좌측면도]

도면대용 우측면사진



[우측면도]

도면대용 평면사진



[평면도]

도면대용 사용상태사진



도면대용 저면사진



[저면도]

[참고도]

(별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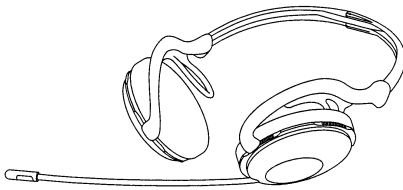
비교대상디자인 3 (을 제1호증의 3)

[디자인등록번호] 제32265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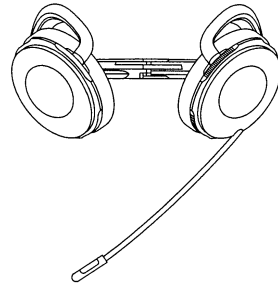
[등록공고일자] 2003. 5. 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마이크로폰 부착 헤드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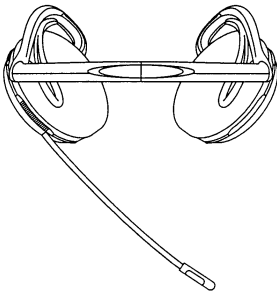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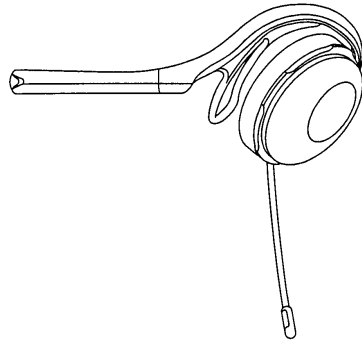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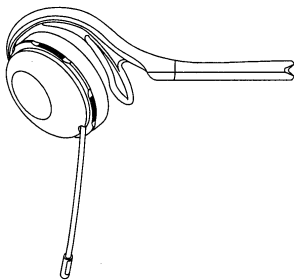
[배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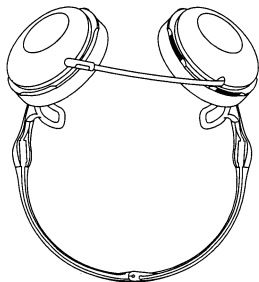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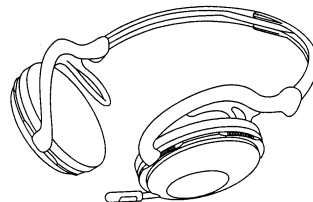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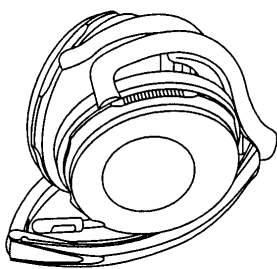
[저면도]



[참고도]



[참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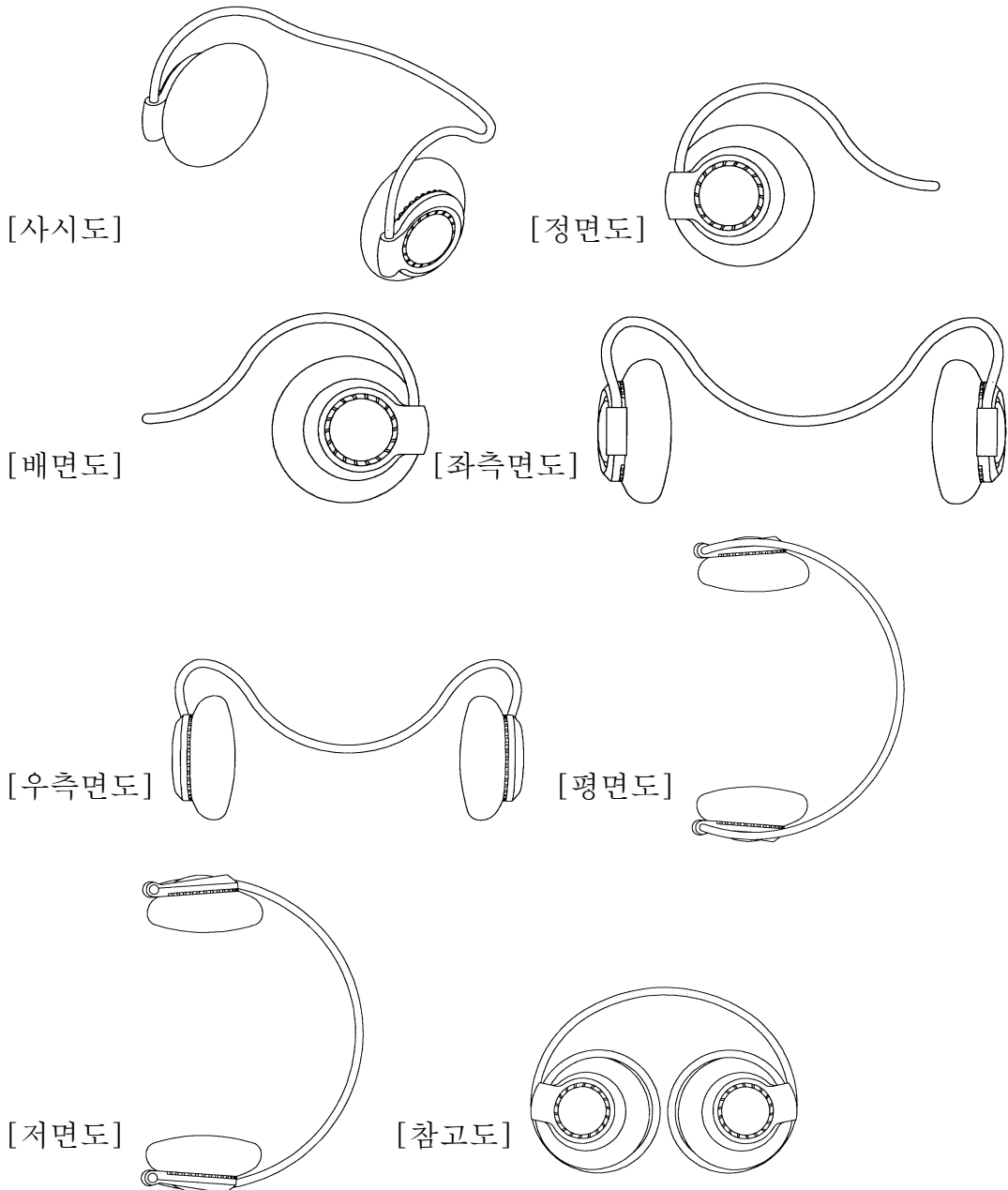
(별지 6)

비교대상디자인 4 (을 제1호증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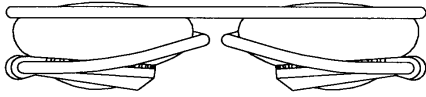
[디자인등록번호] 제220414호 유사 제9호

[등록공고일자] 2002. 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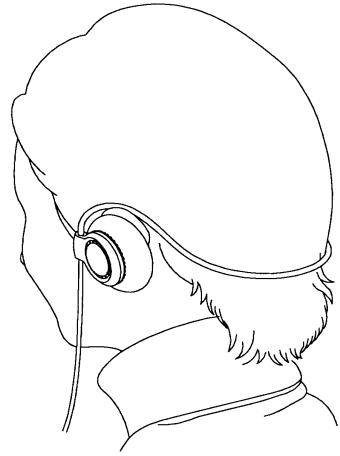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헤드폰



[참고도]



[참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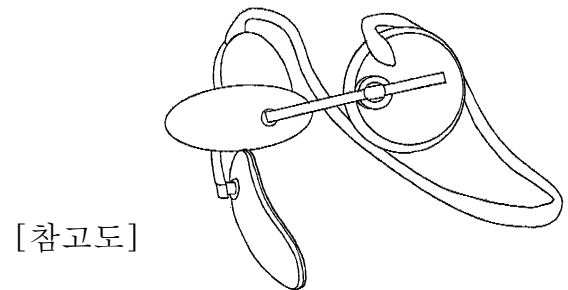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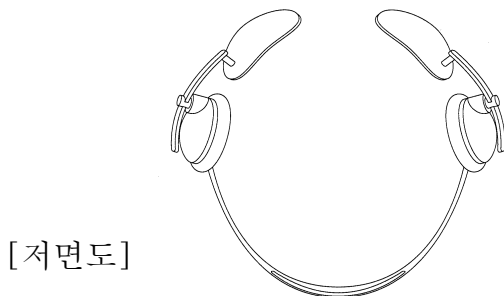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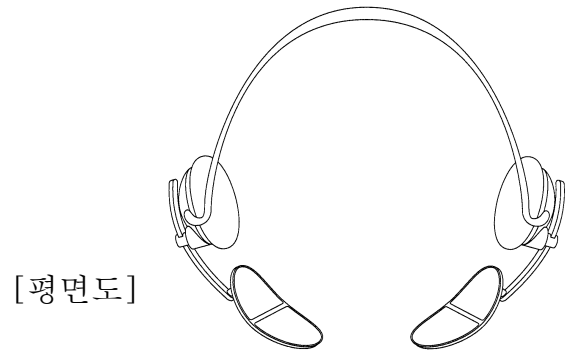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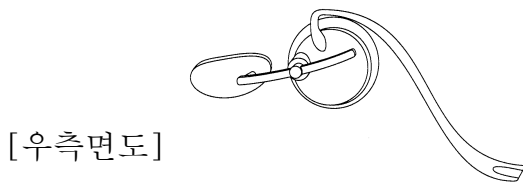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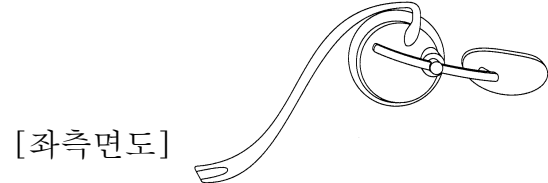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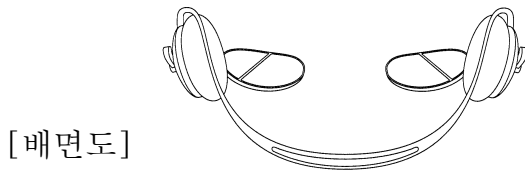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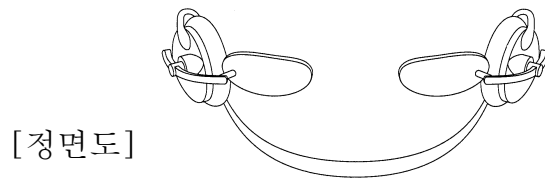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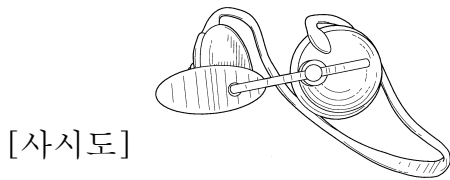
(별지 7)

비교대상디자인 5 (을 제1호증의 5)

[디자인등록번호] 제320547호

[등록공고일자] 2003. 3. 2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안면마사지패드 부착 헤드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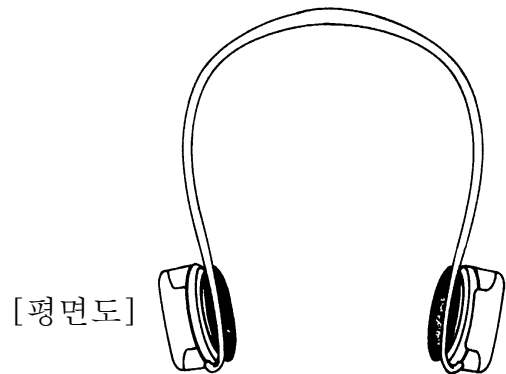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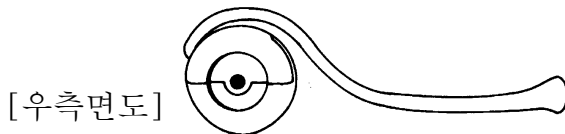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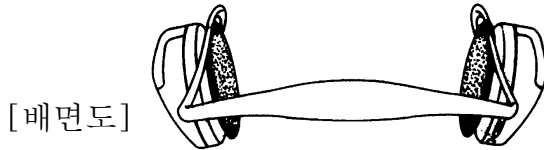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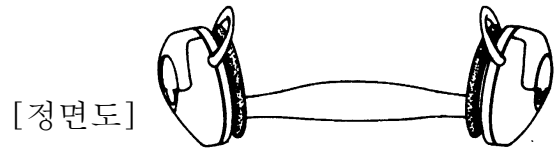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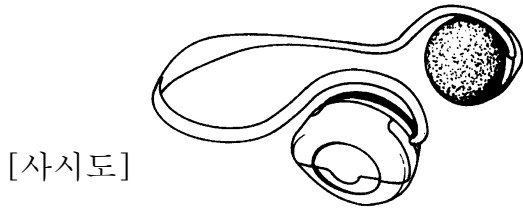
(별지 8)

비교대상디자인 6 (을 제1호증의 6)

[디자인등록번호] 제281634호

[등록공고일자] 2001. 10. 2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헤드폰



(별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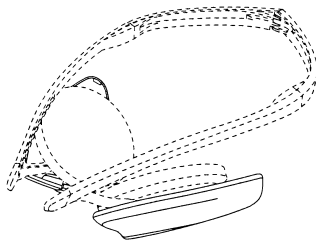
비교대상디자인 7 (을 제1호증의 7)

[디자인등록번호] 제35584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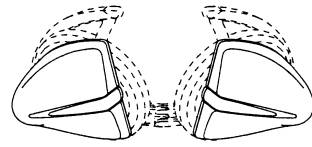
[등록공고일자] 2004. 7.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헤드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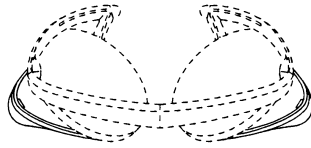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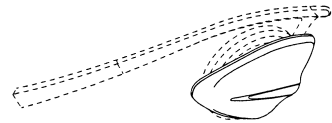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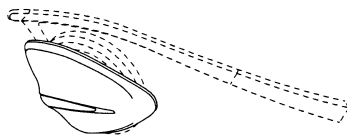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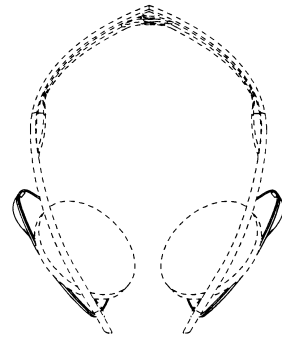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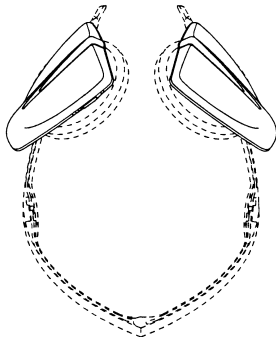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별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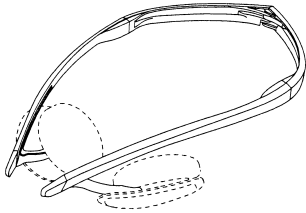
비교대상디자인 8 (을 제1호종의 8)

[디자인등록번호] 제35584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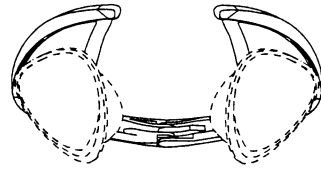
[등록공고일자] 2004. 7.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헤드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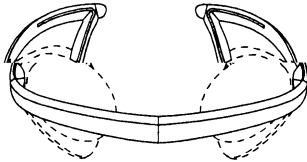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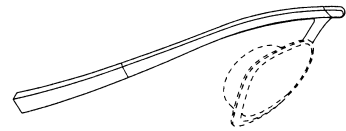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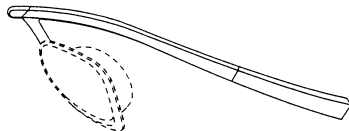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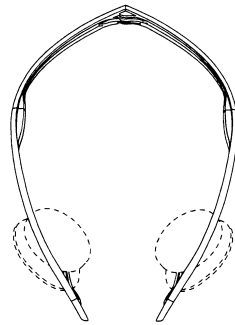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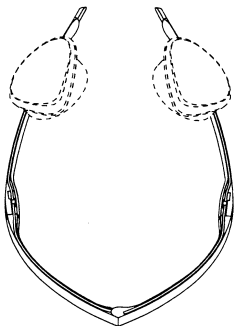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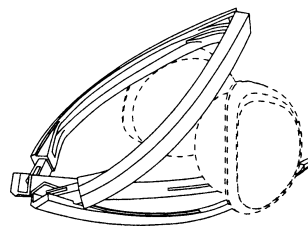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별지 11)

비교대상디자인 9 (을 제1호증의 9)

[디자인등록번호] 제351908호

[등록공고일자] 2004. 5. 2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헤드셋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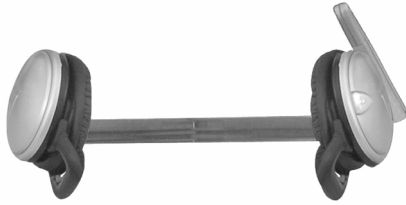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8허11392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아이케이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990-3
		대표이사 윤석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환
피	고	주식회사 대원프로폴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527-1
		대표이사 권창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흥기
변 론 종 결		2009. 1. 22.
판 결 선 고		2009.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08. 8. 22. 2007당310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① 명칭 : 샌드위치 판넬

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5. 10. 13./2006. 7. 10./제419935호

③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별지 1.과 같은 샌드위치 판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④ 디자인권자 : 원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샌드위치 판넬’로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 및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에 표현된 바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7당3100호로 심리한 후 2008. 8. 2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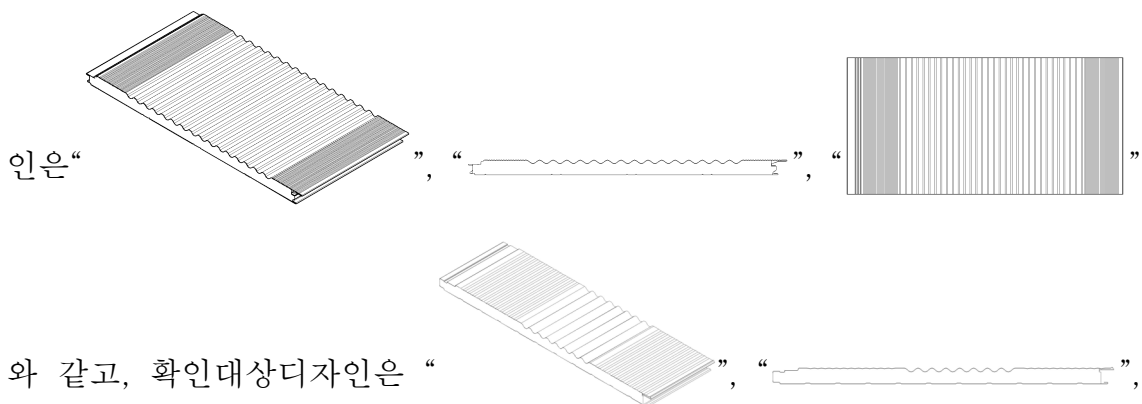
가.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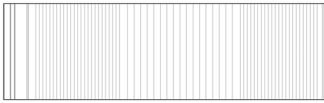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여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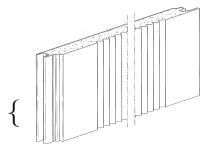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건물이나 시설물의 벽체나 지붕에 내, 외장용 자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판넬’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직사각형의 형태로, 상판과 하판 사이에 충전재를 넣어 충전시킨 형상을 하고 있고, 양 단부는 샌드위치 판넬이 연속하여 결합될 수 있도록 서로 대응되는 결합구조 등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의 형상에서는 디자인을 변형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디자인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시도, 정면도 및 평면도를 차례로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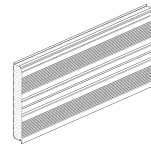


“”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판넬의 평면이 직사각형의 형태이고, ② 상판 중앙에는 큰 골(물결 형상의 홈)이, 상판 양측에는 작은 골이 각 형성되어 있으며, ③ 골의 방향이 길이가 짧은 변과 평행으로 형성되어 있고, ④ 판넬 상판과 하판 사이에는 충전재가 채워져 있으며, ⑤ 양단부에는 판넬이 서로 결합될 수 있도록 암수 결합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 (공고일 : 2004. 12. 13., 을 제1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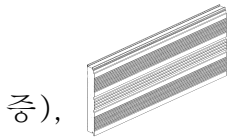


(공고일 :

2005. 6. 20., 을 제14호증),



(공고일 : 2005. 6. 20., 을 제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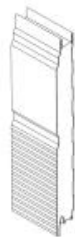
증),

(공고일 : 2005. 9. 7., 을 제16호증),



(공고일 :

2005. 6. 20., 을 제17호증),



(공고일 : 2004. 10. 20., 을 제22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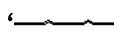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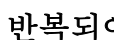


(공고일 : 2005. 6. 8., 을 제23호증),



(공고일 : 2005.

6. 8., 을 제24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디자인들에도 판넬의 평면이 직사각형의 형태이고, 골의 방향이 길이가 짧은 변과 평행으로 형성되어 있으며(을 제1, 22, 23, 24호증), 판넬 상판과 하판 사이에는 충전재가 채워져 있고, 양 단부에는 판넬이 서로 결합될 수 있도록 압수 결합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위와 같은 ①, ③, ④, ⑤의 유사점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판에 있는 큰 골의 면적이 약 3/4, 작은 골의 면적이 약 1/4(각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판에 있는 큰 골의 면적이 약 1/3, 작은 골의 면적이 약 2/3(각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 상판 양측의 작은 골의 간격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매우 좁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와 같은 형상의 골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하판에 반복되어 ‘’와 같은 형상의 골이 형성되어 있고, ㉣ 양 단부의 압수 결

합부의 구조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좌측),  (우측)’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좌측),  (우측)’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 대비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① 내지 ⑤와 같은 유사점이 있으나, 위 ①, ③, ④, ⑤의 유사점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위와 같이 공지된 디자인들에도 상판의 중앙 또는 양측에 동일한 물결 형상의 홈이 형성되어 있거나(을 제1, 22, 23, 24호증), 상판에 작은 홈과 큰 홈이 혼합되어 형성된 디자인이 나타나 있어서(을 제14 내지 17호증), 위 ②의 유사점(상판 중앙에 큰 물결 형상의 홈이, 상판 양측에 작은

물결 형상의 흠이 형성되어 있는 점)의 기본 모티브 자체는 공지된 디자인들에 나타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유사점에도 불과하고, 앞서서 본 바와 같이 상판에 형성된 큰 골과 작은 골의 면적비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작은 골의 간격의 차이가 작다고 할 수 없는 등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유석 _____

 판사 이상균 _____

 판사 김종석 _____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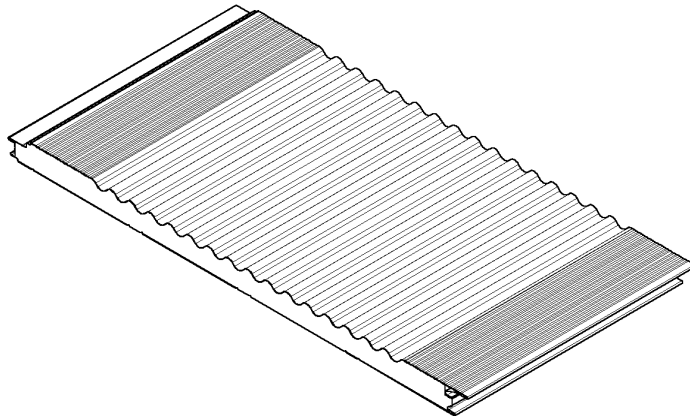
샌드위치 판넬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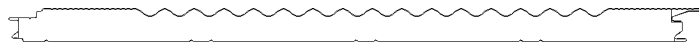
1. 사용목적은 건물이나 시설물의 벽체, 지붕용 부재로서 조립이 간편하고, 단열, 방화성능이 우수한 조립식 패널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2.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임.

【디자인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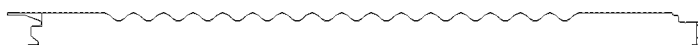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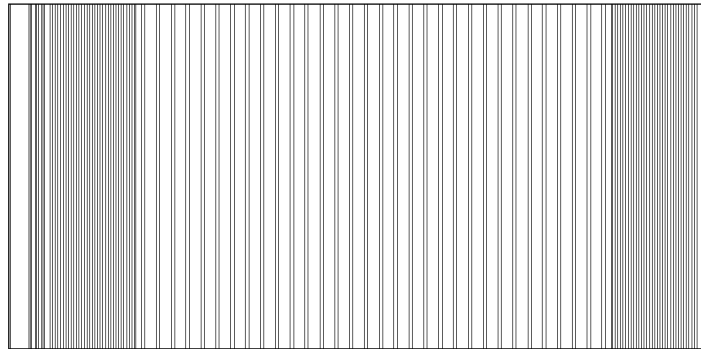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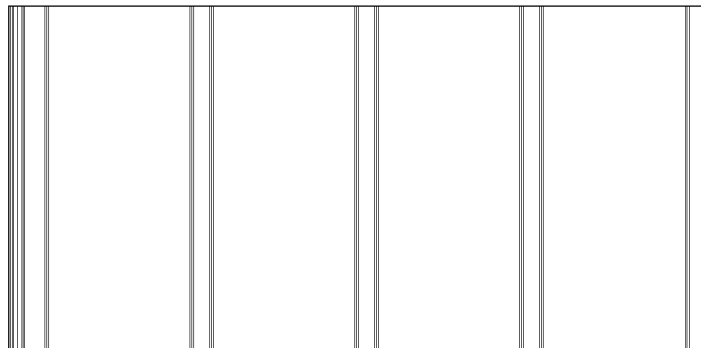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샌드위치 판넬

【확인대상디자인의 상세한 설명】

1. 용도 : 건물이나 시설물의 벽체나 지붕에 내, 외장용 자재로 사용되는 판넬 형태의 건축자재.
2. 기능 : 건물이나 시설물의 내, 외부를 마감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외부적으로 건물이나 시설물의 미감을 높이기 위한 것.
3. 사용목적 : 건물이나 시설물의 벽체, 지붕용 부재로서 조립이 간편하고, 단열, 방화성능이 우수한 조립식 패넬로 사용하기 위한 것.
4. 재질 : 상, 하판은 금속, 충전재는 합성수지임.

【확인대상디자인의 형태】

1.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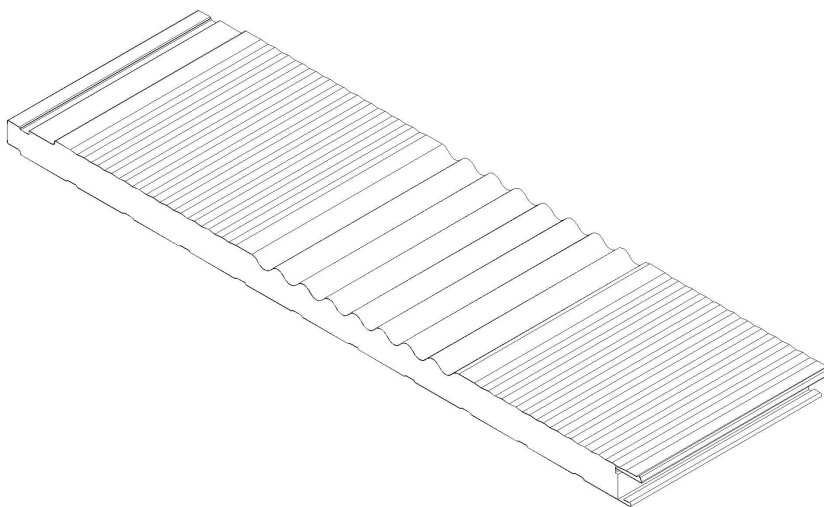
- 가. 물결 형상의 골이 형성된 상판, 하판, 상판과 하판 사이에 충전된 충전재로 이루어짐.
- 나. 상판의 물결 형상의 골은 단부에서는 작게, 중앙부에서는 크게 형성되어 있음.
- 다. 패넬을 연속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패넬의 양 단변은 서로 대응되는 형상으로 성형되어 있음.
- 라. 골의 길이방향으로 패넬을 연속하여 이어 붙일 경우 골은 패넬이 설치되는 방향으로 무한 연장되는 구조임.

2. 모양 및 색채

모양, 즉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은 도시되어 있지 않으며, 색채는 은색 광택을 갖는 금속색임.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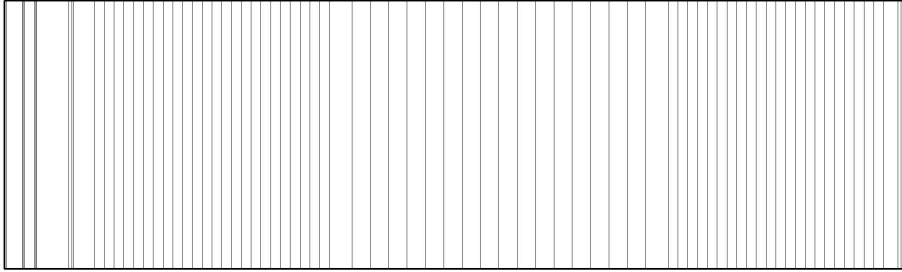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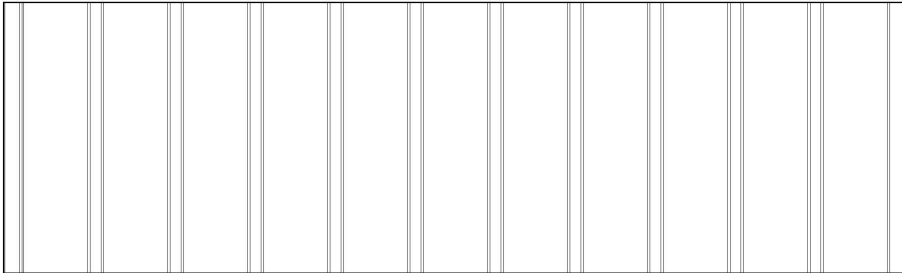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진】

[정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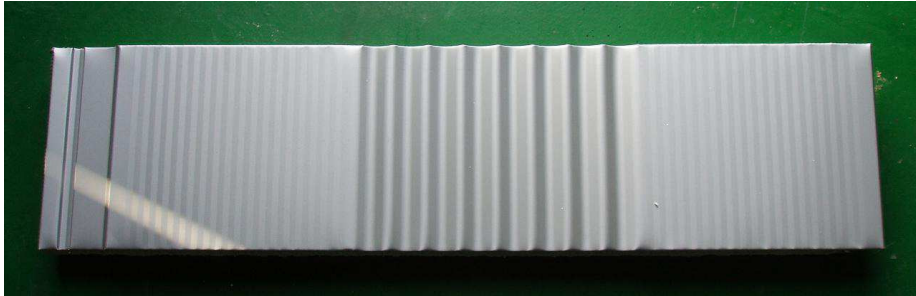
[좌측면사진]



[우측면사진]



[평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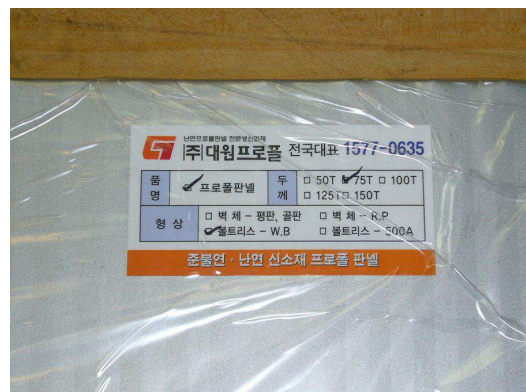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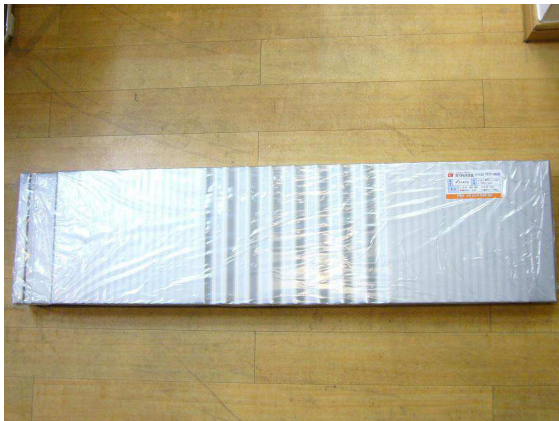
[저면사진]



[저면상세사진]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 사진]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허9252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이희복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피	고	영진산업안전 주식회사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423 대표이사 권용관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성철
변	론	중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08. 6. 20. 2008당1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아래 나.항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로서 아래 다.항 기재 확인대상디자인을 사용하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아래 라., 마.항 기재의 비교대상디자인 1, 2 등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주장하였는바(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아래 바., 사.항 기재의 비교대상디자인 3, 4를 새로 제출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2 등과 각각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물품 : 우편함 도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4. 14./ 2007. 1. 3./ 제436474호

(3) 디자인의 요지와 도면 : 별지 1과 같다.

다.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 : 우편함 도어

(2) 디자인의 요지와 도면 : 별지 2와 같다.

라. 비교대상디자인 1(을 제1호증)

(1) 물품 : 우편함 도어

(2)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11. 15./ 일본 의장등록공보 제1162580호

(3) 디자인의 요지와 도면 : 별지 3과 같다.

마. 비교대상디자인 2(을 제2호증)

(1) 물품 : 우편함

(2) 공연 실시일 : 2006. 4. 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2-8에 소재한

“SK VIEW 아파트”에 납품된 우편함의 카탈로그(을 제4호증 등 나중에 교체 시공된 우편함은 당초 설치된 우편함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선행디자인으로 삼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당초 시공된 우편함과 동일한 것임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카탈로그에 도시된 디자인만을 비교대상디자인 2로 한다.)

(3) 디자인의 요지와 도면 : 별지 4와 같다.

바. 비교대상디자인 3(을 제6호증)

(1) 물품 : 우편함 도어

(2)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12. 19./ 일본 의장등록공보 제1196577호

(3) 디자인의 요지와 도면 : 별지 5와 같다.

사. 비교대상디자인 4(을 제7호증)

(1) 물품 : 우편함 세트

(2) 공개일/ 공개번호 : 2004. 9. 9./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4-248742호

(3) 디자인의 요지와 도면 : 별지 6과 같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 7호증,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각각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인지 여부 및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3.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1) 어느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미적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4)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인 인용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등 참조).

나.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대비

(1) 우선, 위 디자인들은 모두 우편함이나 그에 설치된 우편함 도어에 관한 것으로 그 물품이 동일·유사하다.

(2) 그리고 우편함은 통상 대문이나 아파트 출입구의 벽면에, 우편함 도어는 그 우편함의 앞 부분에 각각 설치되어 우편함 도어의 정면 쪽으로 우편물을 투입하거나 꺼내는 방법으로 사용되므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정면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우편함 도어를 크게 개폐할 경우나 거래시의 외관을 고려한다면 배면도 등 나머지 부분의 심미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확인대상디자인의 정면도는 통상적인 직사각형의 테두리와 개폐 가능하게 설치된 주 도어, 주 도어 상부에 수평 방향의 직사각형인 투입구 및 주 도어 하부 오른쪽에 열쇠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바, 이는 통상적인 직사각형의 도어 형태, 투입구와 원형의 열쇠구멍 형태를 사용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매우 유사하고, 테두리(프레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거나 열쇠구멍의 위치가 좌우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통상적인 프레임 구조를 채용하거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양 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느끼는 심미감은 지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사자 사이에 정면도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점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다툼도 없다).

(4) 확인대상디자인의 배면도는 우편함 도어를 상·중·하로 단순 3분하여 그

경계선을 돌출시키는 방법으로 구분한 뒤, 상부면에는 투입구를, 하부면에는 열쇠구멍을 각각 배치한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바, 비록 비교대상 디자인들에 우편함 도어의 배면도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우편함 도어는 금속재나 합성수지재로 만들어진 한 장의 판에 불과하여 정면도의 특징이 그대로 배면도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투입구나 열쇠구멍 및 프레임 구조에 따른 배면도 형상은 정면도에 대응되므로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도어 뒷부분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질 것으로 보이고, 도어 전체를 상하로 3분한 경계선은 직사각형의 도어 형태를 단순 구분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간 분할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을 결합하여 위 배면도 부분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디자인의 좌·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도 위 정면도와 배면도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부분 정면도 형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 7호증,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문 _____

 판사 강경태 _____

 판사 김태현 _____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의 2)

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 합성수지재임.

(2) 아파트 또는 건물의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의 앞면에 부착하여 우편물을 투입 또는 꺼낼 때 사용되는 문(門)임.

나.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우편함 도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다.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우측면도는 대칭임)]



[평면도(저면도는 대칭임)]



[참고도]



2. 확인대상디자인

가.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 합성수지재임.

나.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우편함 도어"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다. 도면

[사시도]



[참고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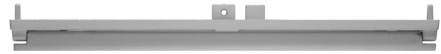
[배면도]



[좌측면도(우측면도는 대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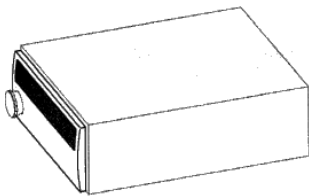


[평면도(저면도는 대칭임)]



3. 비교대상디자인 1(을 제1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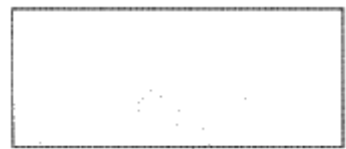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4. 비교대상디자인 2(을 제2호증)

가. 재질 : (1) 고품격의 합금아연의 재질로 두께는 4mm 이상이다.

(2) 뒷면은 충격에 강한 특수수지 재질로 사용하여 튼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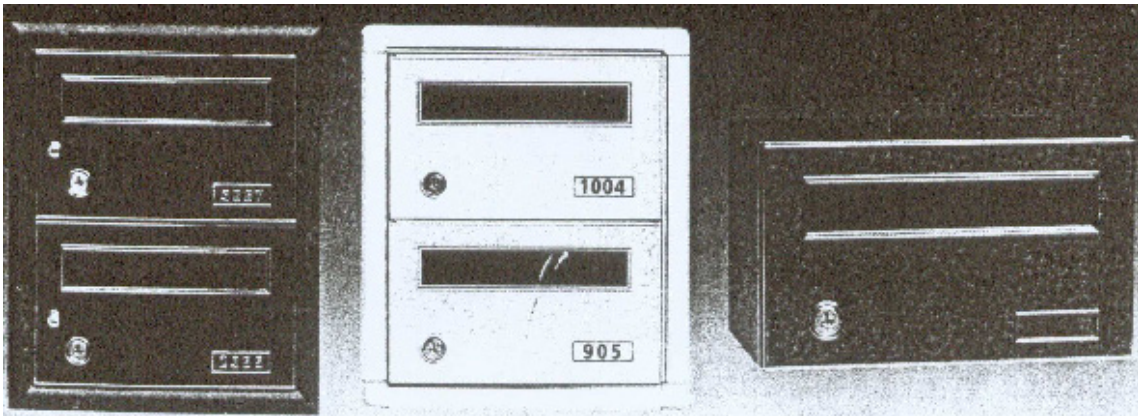
나. 특징 : (1) 아연 주조 제품으로 충격에 강하다.

(2) 전면 Color 스테인리스로 디자인이 미려하고 섬세하다.

(3) 전면은 현장 여건에 맞게 도안하여 시공할 수 있어 고급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많이 시공하고 있다.

(4) 세련된 손잡이가 있어 열고 닫기가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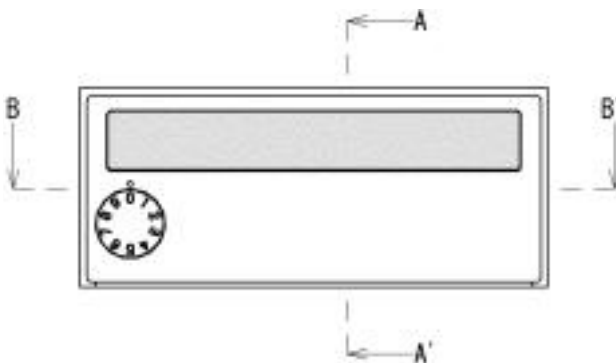
(5) 고품격 제품으로 적극 추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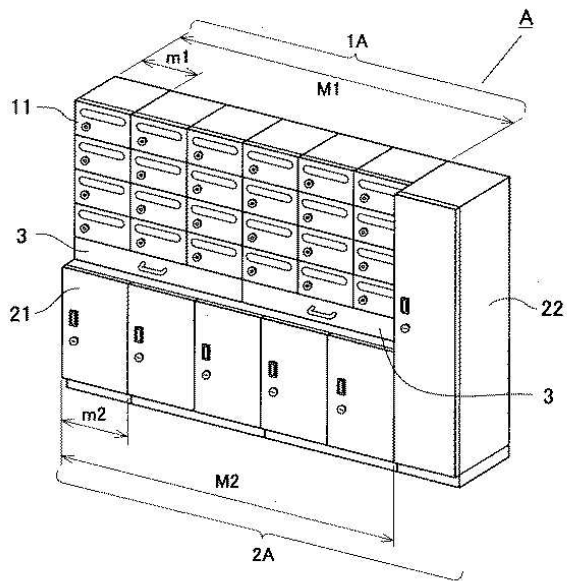
5. 비교대상디자인 3(을 제6호증)

가. 설명 : 정면 문짝 판넬의 윗부분에 망을 거는 형태로 표현된 투함구는 투광성을 갖는 재질이다. 정면 문짝 판넬의 좌측 아래에 다이얼을 돌려 번호를 맞춰 판넬을 여는 다이얼부가 설치되어 있다.

나. 도면



6. 비교대상디자인 4(을 제7호증)



(끝)

디 자 인 판 례

(통권 제19호)

발 행 : 특 허 심 판 원

발행일 : 2009년 6월

편 찬 : 심 판 정 책 과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Tel : (042) 481-8272

Fax : (042) 472-3474
